대학위 규정

1. 대학위 학칙(2022.6.21, 명칭병경)

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학칙은 가톨릭꽃동네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의 학칙 제1조에 규정된 대학교육의 목적을 일층 심오하게 추구하여 지도자적 인격과 창의적 능력을 갖춘 유능한 전문인 재를 배출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(2011.7.1. 자구수정)(2017.11.1.개정)(2018.6.22 자구수정)(2019.4.24. 자구삭제)(2021.6.22. 개정)(2022.6.21. 자구수정)
- 제2조(대학원 구분) ① 본교에는 「고등교육법」과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에 따라 다음 각호의 대학원을 둔다.(2021.6.22. 신설)
 - 1. 대학원 :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 (2022.6.21, 개정)
 - 2. 사회복지카리타스대학원 :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대학원(2022.6.21. 개정)
- 제3조(학위과정)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과 연구과정을 둔다. 다만 연구과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(2021.6.22. 신설)
 - ②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과 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학.석사연계과정을 둘 수 있으며, 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제4조(전공과 정원)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각 과정별 전공 및 학생정원은 [별표 1]과 같다.(2021.6.22. 신설)

제 2 장 입 학

- 제5조(입학시기) 본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학기가 시작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
- 제6조(입학자격)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.
 - 1. 국내,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
 - 2.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
- 제7조(입학지원 서류) ①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원서와 소정의 서류 및 전형료를 첨부하여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입학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제8조(입학전형)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이나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하여 입학전형을 한다.
- 제9조(입학사정) 입학(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)사정은 대학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 가 심의한다.(2010.3.1. 자구수정)
- 제10조(입학허가) 입학허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.(2010.3.1. 자구수정)
- 제11조(편입학)① 편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 허가할 수 있으며, 전형방법 및 절차는 입학의 경우에 준한다.(2010.3.1. 자구수정)
 - ②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제12조(재입학)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하는 경우,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 다만 본 학칙 제28조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

허가하지 아니한다.(2015.10.12. 자구삭제)

②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3 장 수업 및 수학연한

제13조(수업) ①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.(2018.6.22 자구수정)(2021.6.22 개정)

- ② 수업은 주간수업, 야간수업, 주말수업, 계절수업, 원격수업,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수 있다.(2021.6.22. 항 추가)(2022.6.21. 개정)
- ③ 주간수업과 야간수업 외 시간의 수업을 개설할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.(2018.6.22 항 추가)(2021.6.22 자구수정)(2022.6.21. 개정)

제14조(수업연한) 대학원 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2021.6.22 개정)

- 1. 석사학위과정 : 2년 이상
- 2. 학.석사연계과정 석사학위 과정: 1.5년 이상

제15조(재학연한)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통산하여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 4 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자워퇴학 및 수료

제16조(등록) ①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.

- ② 입학금,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결석, 출석정지, 정학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하다.
- ③ 이미 납부한 등록(납입)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나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17조(휴학) ① 질병,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.
 - ② 총 휴학기간은 2년(4학기)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휴학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.
 - ③ 군입대로 인한 휴학기간과 임신·출산·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2항에 따른 휴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 - ④ 제3항의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8조(복학) 휴학자의 복학은 매학기 등록기간 중에 한하여 허가한다.

제19조(제적)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.

- 1.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자
- 2. 소정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
- 3. 학칙 제15조에 의한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수료를 하지 못한 자
- 4. 기타 대학원생으로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
- 제20조(자원퇴학) 자원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한다.
- 제21조(수료와 졸업) ① 수료는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의미하며, 졸업은 각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논문 심사 또는 졸업연구보고서 심사에 합격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.(2021.6.22. 항 추가)
 - ②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.(2021.6.22. 조 명칭변경)

제 5 장 교과 및 학점

- 제22조(교과과정)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확정한다.
- 제23조(이수학점) 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이수하여야 할 학점, 학생이 매학기 신청 할 수 있는 학점과 추가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에 따른다.(2022.12.6. 자구 수정)
 - ② 〈삭제〉(2022.12.6. 삭제)
- 제24조(보충과목의 이수) ① 석사학위과정 학생의 학사학위의 전공이 석사학위과정 전공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6학점 이내에서 보충과목의 이수를 부과할 수 있다.(2010.3.1.학점수정)
 - ② 보충과목의 수강으로 이수하는 학점은 학기당 이수학점에서 제외한다.
 - ③ 보충과목의 지정은 전공주임교수가 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25조(타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) ① 본교 또는 국내.외 다른 대학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위원회의 심의 거쳐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(2022.12.6. 자구수정)
 - ② 본교 또는 타 대학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(2022.12.6. 자구수정)

제 6 장 학업성적

제26조(성적등급)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.

| 등 급 | 실 점 | 평 점 | 비고 |
|-----|--------|-----|----|
| A+ | 100-95 | 4.5 | |
| Ao | 94-90 | 4.0 | |
| B+ | 89-85 | 3.5 | |
| Во | 84-80 | 3.0 | |
| C+ | 79-75 | 2.5 | |
| Со | 74-70 | 2.0 | |
| F | 69이하 | 0 | |

- 제27조(학점인정) 학생의 수강과목별 출석률이 강의실시 시간의 4분의 3 이상이고, 학업성적의 등급이 Co(2.0)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.
- 제28조(성적미달) 이수한 전 교과 성적의 평점평균이 3.0에 미달인 학생은 이를 제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학기에 한하여 조건부 등록을 허가할수 있다.

제 7 장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

- 제29조(논문제출 자격) ①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소속 대학원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 수료예정자 및 수료자로 한다.
 - ② 어학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(2022.12.6. 자구수정)
- 제30조(논문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) ①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예정자는 3학기 정기등록 이후 소정의 기일 내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3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야 한다.(2010.3.1.단서조항삭제)(2022.6.21.개정)

- ② 논문연구계획서의 심사는 제32조를 준용한다.(2022.6.21.개정)
- 제31조(논문심사) 석사학위 논문의 심사는 대학원과 사회복지카리타스대학원의 전임교수와 출강교수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주심 1인과 부심 2인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.(2022.6.21. 자구수정)
- 제31조의2(학위논문의 대체) 석사학위의 경우 학위논문에 상응하는 실적을 논문 작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가톨릭꽃동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대체 인정에 관한 운영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.(2024.3.1.조 신설)
- 제32조(논문심사 및 판정) 석사학위 논문심사의 진행과 합격 인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.
 - 1. 주심이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재한다.(2019.4.24. 자구수정)
 - 2. 논문심사의 합격은 내용심사의 경우 심사위원 2/3이상의 찬성을 합격으로 하고, 구술심사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평점이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(2022.6.21. 개정)
- 제33조(졸업시험) (2010.3.1.조항삭제)
- 제34조(학위수여) ① 규정된 수업연한과 규정된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중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소정의 졸업사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이 이를 수여한다.
 - 1. 석사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하여 통과된 자
 - 2. 졸업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 통과된 자
 - ② 학위를 수여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.(2015.1.24.항신설)
- 제35조(학위종별)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[별표2]와 같다.(2017.11.1.개정)(2021.6.22.개정) 제36조(학위증서) 석사학위의 수여는 별지 "서식 1"의 학위증서로서 행한다.

제 8 장 상 벌

- 제37조(장학금)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학비 마련이 어려운 학생 또는 현장실무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또는 연구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장학금 또는 연구보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제38조(징계) ①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위배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.
 - ②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9 장 공개강좌.연구과정.외국인학생 및 수료후 등록생

- 제39조(공개강좌) ① 본 대학원의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 또는 강습회를 개설할 수 있 다.(2019.4.24. 자구수정)
 - ②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.기간.장소.수강자격.수강인원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대학원장이 결정한다.
- 제40조(연구과정) 본 대학원에서 실무와 더불어 이론적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연구과정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(2019.4.24. 자구수정)
 - 1.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요건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.
 - 2. 연구과정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한다.
 - 3. 연구 분야는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.

- 4. 연구과정 수료자에게는 연구과정 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.
- 제41조(외국인 학생 및 북한이탈주민) 본 대학원의 입학자격을 갖춘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 민으로서 입학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입학절차를 거쳐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(2010.3.1,자구추가삽입)
- 제42조(수료후 등록생) ①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와 연구보고서 제출을 위하여 학점을 추가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수료 후 등록생 으로 등록하여야 한다.
 - ② 수료 후 등록생 과정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 및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등록기간 내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(2011. 3. 1. 신설)

제 10 장 직 제

- 제43조(조직) 대학원과 사회복지카리타스대학원에는 대학원장을 두며 각 전공에는 주임교수를 둔다.(2010.3.1.자구삭제)(2019.2.8.개정)(2022.6.21. 자구수정)
- 제44조(임기) 대학원장 및 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연임 할 수 있다.(2021.6.22.자구수정)
- 제45조(대학원위원회의 구성) ①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 위원회(이하 "위원회")를 둔다.(2022.6.21.개정)
 - ② 위원회는 총장이 지정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대학원장은 위원장이 된다.(2013.4.22.인원변경)
 -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제4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학생의 입학.수료 및 졸업.징계에 관한 사항
 - 2. 전공의 설치.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
 - 3. 교과과정 및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
 - 4. 대학원 또는 위원회에 관한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 - 5. 공개강좌의 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
 - 6.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- 제47조(위원회 소집 및 의결방법)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(2011. 3. 1. 자구수정)

제 11 장 준용규정 등

- 제48조(준용규정) 본 학칙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톨릭꽃동네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.(2011.8.17. 교명변경)(2021.6.22. 개정)
- 제49조(시행세칙) 본 대학원 학칙 시행을 위한 세칙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(2021.6.22. 자구수정)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학칙은 200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200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재적생은 구 학칙을 적용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201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재적생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. 다만 제22조(이수학점), 제29조(논문연구계획서 제출), 제32조(졸업시험)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개정된 학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개정된 학칙은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개정된 학칙은 201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개정된 학칙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개정된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3조1호 설치 전공 중 '카리 타스학전공'은 2018학년도 2학기부터 개설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개정된 학칙은 201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최

①(시행일) 이 개정된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개정된 학칙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초

- ①(시행일) 이 개정된 학칙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202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재적생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.
- ③(경과조치) 일반대학원 및 학.석사연계과정은 2023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개정된 학칙은 202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202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재적생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개정된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개정된 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] 제4조(전공과 정원) 관련(2021.6.22. 개정)(2022.6.21. 개정)

대학원과 사회복지카리타스대학원 설치전공 및 학생정원표

| 구분 | 대학원명 | 계열 | 과정 | 전공 | 입학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|-----|--|
| 7 世 | 네박천정 | | | | 정원 | |
| 일반대학원 | 대학원 | 인문사회 | 석사학위 | 상담심리학전공 | 20명 | |
| 특수대학원 | 사회복지카리타스 대학원 | 인문사회 | 석사학위 | 사회복지학전공 | 20명 | |
| | | | | 카리타스학전공 | | |
| 2개 대학원 | | | | 3개 전공 | 40명 | |

[별표 2] 제35조(학위종별) 관련(2021.6.22. 개정)(2022.6.21. 개정)

대학원과 사회복지카리타스대학원 학위종별

| 구분 | 대학원명 | 계열 | 과정 | 전공 | 학위종별 |
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일반대학원 | 대학원 | 인문사회 | 석사학위 | 상담심리학전공 | 문학석사 |
| 특수대학원 | 사회복지 | 인문사회 | 석사학위 | 사회복지학전공 | 사회복지학석사 |
| | 카리타스 대학원 | | | 카리타스학전공 | 문학석사 |
| 2개 대학원 | | | | 3개 전공 | |

제000호 KKOTTONGNAEUNIVERSITY

학위기

성명홍길동 학번 000000000 0000년 00월 00일생

위 사람은 이 대학교 ○○대학원 소정의 전 과정(○○○○학전공)을 이수하고 ○○○○학석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인정함.

가톨릭꽃동네대학교 대학원장

000박사 0 0 0

위 인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. 0000년 00월 00일



가톨릭꽃동네대학교 총장

000박사 0 0 0

학위등록번호: 꽃대 0000(석)000

利000克 KKOTTONGRAEUNIVERSIT

학 위 기

성명 홍 길 동 학번 000000000 0000년 00월 00일생

위 사람은 이 대학교 〇〇대학원 소정의 전 과정(〇〇〇〇학전공)을 이수하고 〇〇〇〇학석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인정함.

가톨릭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카리타스대학원장 OOO박사 O O

위 인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. 0000년 00월 00일



가톨릭꽃동네대학교 총장

000박사 0 0 0

학위상류번호: 꽃대 0000(석)000